<앞 면>

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

신 청 자 (대부자)	성명	생년월일 (nps번호)			
	전화번호(집) (휴대폰)		E-mail		
대 부 금	금 원 (₩)				
대부용도	☐ 의료비 ☐ 배우자 장제비 ☐ 전·월세자금 ☐ 재해복구비				
상환기간	☐ 원금균등분할상환 : 개월 ☐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년, 분할상환기간 개월	정기상환일	매월 연금지급일	상환내역안내서	☐ 우편 ☐ E-mail ☐ 미희망
대 부 금 지 급	금융기관	계좌번호			
대 부 금 상 환 용 자동이체 신 청	금융기관	계좌번호			
	예금주명	생년월일			

제외대상자 해당 여부 확 인	①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(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) ③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④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⑤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·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⑥ 장애4급수급자, 연금급여 해외송금자, 기초생활수급자	☐ 예 ☐ 아니요 ※ "아니요"는 ①~⑤번 모두 해당 없는 경우임
기타사항	• 제외대상 해당여부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 취소 및 전액상환(연금전액공제) 됩니다. • 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」에 의하여도 국민연금실버론 대여금(원금,이자, 연체이자)은 면책되지 않으며, 연금급여에서 공제됩니다. • 희망하는 경우 연금급여에서 공제(1/2범위 이내)되나 공제액이 부족한 때에는 자동이체와 병행하여 상환이 가능하므로 자동이체(연금수급계좌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	

접 수 인

위와 같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

■ 공단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,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는 민원창구·공단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,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담당자 실명제 도입 등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만약,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, 지연·학연·혈연관계 등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있으시면 공단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해주십시오.

부조리 신고센터 ▸국민연금 홈페이지(www.nps.or.kr) ➡ 클린센터)

< 기재 요령 및 유의 사항 >

1. 대부신청자의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E-mail(해당자)을 기재하십시오.
2. 상환기간을 선택하여 기재하십시오
   ※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(1년 또는 2년 연단위 선택)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3. '대부용도', '상환내역 안내서' 수신방법, '제외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' 해당 항목에 "☑"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※ 상환내역안내서 : 1년단위 본부 일괄 발송(상환완료자 제외)
4. 대부금 수령 및 대부금 상환 금융기관의 계좌는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.
   ※ 대부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는 대부 신청자의 연금 급여통장 계좌와 동일하여야 합니다.
5. 신청인은 연금수급자 본인만이 가능하며, 본인이 서명(날인)을 하여야 합니다.

< 구 비 서 류 >

공통서류	① 대부 약정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안내 및 제공 동의서 ③ 대부 신청자 신분증 ※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등의 국가기관 발행 자격증(증명사진이 있는 경우에 한함)
개별서류	① 의료비 : 진료비계산서·영수증 또는 진료비납입확인서(약제비 포함) ② 배우자 장제비 :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**<공단전산 확인 시 불필요>** ③ 전·월세자금 : 주택 전·월세 계약서 원본(확정일자, 전입신고, 등기부등본 열람) ④ 재해복구비 : 피해사실확인서, 화재증명원

<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·지급 및 상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. >

